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춘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856 발의연월일: 2025. 4. 16.

발 의 자: 정춘생·황운하·신장식

이해민 · 차규근 · 김선민

서왕진 • 박은정 • 강경숙

김재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, 구조·구급 등의 활동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역 거주민 중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등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, 의료기술의 발달로 국민 전반의 건강이 개선되어 노동 가능 연령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, 농·산·어촌 등 인구 감소가 급격한 지역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의용소방대 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의용소방대의 정년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되었음.

이에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려는 것임(안제5조).

법률 제 호

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 중 "65세로"를 "70세로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정년) 의용소방대원의 정년	제5조(정년)
은 <u>65세로</u> 한다.	<u>70세로</u>